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- 56 호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1월 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2022년 하반기 광진구 장학위원회 정기회의 심의결과 장학생 선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학생 추천 주체를 학교장(대학총장)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장학생 추천주체 변경(안 제13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참조 : 아동청소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내용

1)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 및 그 사유)

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안·단체의 경우 법인명·단체명과 그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
3)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나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이메일

다. 제출기관 : 서울특별시 광진구청(아동청소년과)

- 주　　소 : (05026)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
- 전화번호 : 02-450-7388
- 팩스번호 : 02-411-1737
- 이 메 일 : amlswl@gwangjin.go.kr